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장해보상 2년 선급금을 장해보상 4년 선급금으로 전환하여 장해보상 2년 선급분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기에 추가지급 타당여부는?

A 1. 장해보상 선급금 제도는 장해보상연금 대상자들이 치료종결 당시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도입하게 되었고, 선급금 선택을 재해근로자가 최종 결정에 따라 선급기간을 결정하도록 하여 연금 선급금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연금지급 절차의 문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귀 질의와 같이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자가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던 때에 정당한 의사결정으로 최초 2년분을 선택하여 지급 받았다면 이후 추가로 2년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Q 척추고정술 시술 후 업무외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해보상지급여부는?

1. 개요 : 피재자가 2000년 3월 작업중 업무상재해로 같은 해 4월에 척추 2개 분절간(요추3-4, 4-5번간)척추고정술을 시술 받고 통원치료 중 같은해 5월에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질환으로 사망하였다.

2. 주장내용 : (갑)사망 당시 피재자는 증상고정 즉, 치유의 상태에 이르지 않고 요양 중이었으므로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을)장해의 경감이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동통완화를 위한 단순치료에 불과하고 현재의 장해등급과 치료종결후의 장해등급에는 변동

이 없으므로 장해보상 대상이 된다.

A 귀 문과 같이 2000년 4월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2000년 5월에 근로자의 개인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Q 가. 00회집 소속 근로자 조00가 2001년 11월 7일 산업재해를 입고 2002년 10월 30일 치유되어 우리지사서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2년 선급분(2002. 11. 1~2004. 10. 31.) 금 3천683천164원을 2002년 11월 26일 수령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조00가 기지급 받은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구상권을 취득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甲의 변제는 무권리자인 甲에게 변제한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 37609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甲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甲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것이 되어(민법 제470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을 상대로 한 구상권을 상실하게 되고, 甲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甲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하거나, 또는 기망 치료비는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의 경우에는 甲에게, 후자의 경우에는 甲에게 치료비를 구상하게 될 것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Q 저는 甲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 당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甲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저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지도 하는데, 민일 제가 甲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인데 맞는지요?

A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구상권)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구상권 취득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 46046 판결 등). 따라서 민일 甲이 치료비를 받은 후에 甲과 민 일 형사상 손해의 전부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금을 받는다면, 귀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마든지 건강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위력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양생지도의 첫 번째 덕목은 '소언 어양내기(小言語養內氣)', 즉 말을 적게하여 내기(內氣)를 키우라는 것이다. 내기는 우리 몸에 있는 생명에너지를 말한다. 기는 폐를 통해 몸 안에 쌓이고 기를 통해 우리의 몸은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말을 할 경우에는 이 기가 점점 소모되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할 경우 현기증이 나고 두통이 생기는 것도 몸 안의 내기가 과하게 소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내기가 약해지기 쉬우므로 충분한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갖거나 양기를 보충할 수 있는 보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도 꼭 필요한 말만 절도 있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의정부 수 한방병원 (031-820-7200) www.1stherbang.co.kr

건강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②

습관이란 무엇인가? 흔히 습관을 가리켜 제2의 천성이라고 한다. 이 말은 습관이 우리 생활에 있어 천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천성만큼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력한다면 누구나 고칠 수 있는 것이 습관이기도 하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99%는 건강하다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99%의 건강은 점점 수치가 낮아진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있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활습관이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고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하는 것일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습관 역시 백인 백색이다. 그 속에서 누구나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습관, 최대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한다.

옛사람들은 양생지도(養生之道)라 하여 건강하게 살기 위한 7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건강철학이며 그 기본단 지킨다면 얼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순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원인이 생기는 걸 규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전일까 환경일까 아무 두 요인이 모두 혼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하는 추측뿐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첫째 동성연애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자신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동성연애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동성연애는 전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동성연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셋째 같은 성끼리 접촉을 가진 경험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동성연애자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동성연애에 관할을까? - 동성연애 원인들

동성연애란 자기와 같은 성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것으로 간혹 가다가 성행위로 발전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옛날부터 동성연애자는 항상 경멸 당했고 심지어는 법으로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동성연애를 유발시키는 원인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동성연애의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15세 전후로 사춘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자기들끼리 성의 유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만 가지고 그들을 동성연애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약간 지나친 행동을 비정상이라고 할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김상철**



이나 씨 같은 것은 짓게 되면 부풀어서 제거가 어려울 수 있다. 벌레 같은 경우는 귀 안 고막 쪽으로 파고들려고 하기 때문에 심함 통증과 소음을 유발한다. 병원에서는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여 외이도 이물질질을 제거하는데 벌레의 경우는 마취제나 소독제를 이용하여 벌레를 죽여 제거를 한다. 벌레일 경우 강한 빛을 비추어 제거할 수 있다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 가정내에 소독용 알콜이 있으면 알콜을 외이도에 주입하여 벌레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고 제거와 확인을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포천병원 (031-539-9114)

우리 몸에는 어떤 이물질이 있을까요? ①

"동전을 삼켰어요", "장난감을 귀에 넣었어요" 이러한 문제로 응급실을 찾게 되는 소아들이 가끔 있다. 우리 신체 어느 부위에나 여러 이물질질을 주입할 수 있는데 귀, 코, 입, 흔한 부위에 있을 수 있는 이물질 상

황에 대해 살짝 알아보자. 1) 귀의 이물질 귀를 후비는 고막 바깥쪽 부위를 외이도라고 한다. 외이도 이물질을 주사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 습, 지우개, 장난감, 풍, 벌레 등 다양한 이물질이 있을 수 있는데 귀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택이 세법에서 정하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기 때문에 2주택 중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서울 등 2년 거주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득,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2년 거주 및 3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법의 비과세 규정은 각 사안별로 심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Q 본인의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아내와 결혼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두채 중 한 채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하나요?

A 만약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결혼할 당시에 본인소유 주택은 3년, 아내소유분은 2년간 보유하였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이전, 상속,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두어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하는 주

포천신문 창간 1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6년 동안 한결 같은 맛을 제공하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신메뉴 출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전문

2층 풍천민물장어



250억 보유, 연말연시 예약중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542-1887~8